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92

발의연월일 : 2024. 9. 19.

발 의 자:이재정·강선우·박지원

민병덕 • 박홍배 • 강준현

정준호 • 안태준 • 민홍철

차지호 • 안철수 • 이용선

임미애 • 이해식 • 이연희

백혜련 • 한준호 • 김태호

추미애 • 강경숙 • 이주영

의원(21인)

제안이유

최근 분쟁·기후변화·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국내·외 중요도 상승과,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2024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17.5%, 무상 ODA중 2 9.0%인 8,965억원 규모로 진행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인도적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6.5%p)했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이행의 법적 근거인 「해외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지원의 정의에 부합한 법적 기반은 현재 미비한 상태임.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대응·복구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 OCED 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법위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함.
- 나.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개념 및 유 형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그 외 '해외긴급구호'에 국한되었던 기존 조항들을 '인도적 지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함.

법률 제 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호, 재난 복구 및 예방 등 인도적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가뭄·지진·태풍·홍수·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나. 사회재난: 자연재난 외에 분쟁·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등 대형사고나 감염병 확 산 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 2. "인도적 지원"이란 해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명구조,

- 고통경감 및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긴급구호: 해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 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
- 나. 재난 복구 및 조기회복: 긴급구호 외에 해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
- 다. 재난 예방 및 위기경감: 잠재적이거나 임박한 해외재난에 따른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경감하며 해외재난에 대응하는 역량 과 체계가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
- 라. 만성재난지원: 해외재난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대처능력이 불충분하여 피해를 입은 사 람들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
- 제3조(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인도법 및 난민법 등 국제규범에 입각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3조의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한다.
 - ② 국가는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우선하여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 ③ 국가는 인도적 지원의 추진에 있어 빈발하는 해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④ 국가는 피해국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 기관 간 협력 및 조정 강화를 통하여 인도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인도적 지원 활동) ①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괄한다.
 - 1. 긴급구호대의 파견
 -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 3. 현금지원
 - 4. 보건의료활동
 - 5. 위기상황에서의 교육 및 보호 활동
 - 6. 수송지원
 - 7. 재난 복구 및 조기회복
 - 8. 재난 예방 및 위기경감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인도적 지원 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대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 ·관합동 인도적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도적 지원 기본대책(이하 "기본대책"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긴급구호대의 편성
 -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 · 장비의 비축 · 보관 · 정비 · 검수 등
 - 3. 구호인력 · 물품의 신속한 소집 · 수송 체계의 구축
 - 4.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5. 민간 인도적 지원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 6.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협력
 -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의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인도적 지원의 활동결과 및 그 평가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 2. 구호물품·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 3. 보건의료활동

- 4. 민간 인도적 지원단체와의 공조현황
- 5. 인도적 지원 관련 개선사항
- 6. 그 밖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기본대책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6조제1항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 2. 진료체계 구축
 -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할 수 있다.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민·관합동 인도적 지원 협의회 소집)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받거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인도적 지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민·관합동 인도적 지원 협의회) ① 정부는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인도적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 2. 긴급구호대 파견 등 인도적 지원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3.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 5. 인도적 지원 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 6. 인도적 지원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 7. 그 밖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 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 · 구성 및 파견 요구
 - 3. 소방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 ③ 그 밖에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긴급구호본부) ① 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긴급구호 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 ③ 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

- 른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 항제2호에 따라 긴급구호대 파견이 결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 들로 긴급구호대(이하 "긴급구호대"라 한다)를 편성한다.
 -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 2.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 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 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 5. 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 ② 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긴급구호대장) ① 외교부장관은 긴급구호대의 장(이하 "긴급구호대장"이라 한다)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④ 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 제1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인도적 지원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파견이 결정된 긴급구호 대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 공할 수 있다.

- 제18조(인도적 지원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파견이 결정된 긴급구호대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사망(상해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2. 상해를 당한 경우
 - 3. 질병에 걸린 경우
 -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제1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 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부장관이 제1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및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 의회는 각각 제7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대책 및 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